

 금융위원회	<b>보도참고자료</b>			 금융감독원
	<b>보도</b>	<b>배포 후 즉시</b>	배포	2019.7.30.(화)

<b>책 임 자</b>	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김진홍 (02-2100-2601)	<b>담 당 자</b>	정훈 사무관 (02-2100-2517) 김민석 사무관 (02-2100-2518)
	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장 김영철(02-3145-5650)		유선근 부국장 (02-3145-5635)
	금감원 특별조사국장 윤동인(02-3145-5100)		권태경 팀장 (02-3145-5103)
	한국거래소 심리부장 김경학(02-3774-9140)		이국철 팀장 (02-3774-9141)

## **제 목 :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**

### **1. 개 요**

□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·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·의결하여, 부정거래,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,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·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하고 있음

○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고발·통보한 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배포함

#### **※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조치 실적**

- ① 증선위 안건 수 : ('14년) 119 ('15년) 123 ('16년) 119 ('17년) 103 ('18년) 104
- ② 검찰 고발·통보 안건 수 : ('14년) 98 ('15년) 79 ('16년) 81 ('17년) 76 ('18년) 75

## 2. 주요 제재 사례

- ① 전업투자자인 甲은 일평균거래량이 적어 소규모금액으로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A사 주식 등 12개 종목의 주식을 대량 매집한 후 주가를 상승시키고 종가를 관리하는 등 시세를 조종한 후 차익실현('18.1월 수사기관 통보)
- ② 코스닥 상장사(엔터테인먼트회사)의 경영권 양수인 등은 무자본으로 동사를 인수함과 동시에 중국계 투자자본이 동사를 인수한다는 허위사실을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키고, 前 최대주주 및 재무적 투자자는 보유 주식을 고가에 매도 ('18.8월 수사기관 고발)
- ③ 주가조작 전력자가 전액 차입금으로 주식자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공시하지 않는 등 방법을 이용하여 무자본으로 2개 상장사를 인수하고, 주가 상승 시 보유 하던 차명주식을 처분('18.10월 수사기관 고발 등)
- ④ 자산운용사 대표 및 사채업자 등이 공모하여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하는 한편, 증권 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조달한 회사자금을 타범인주식 취득 등을 통해 횡령('18.12월 긴급조치)
- ⑤ 상장사 임원이 제3자배정 유상증자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 전 지인에게 전달하고, 정보수령자가 회사 주식을 매수, 부당 이득을 실현('19.2월 수사기관 통보)

(붙임) ‘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’ 참조

### 3. 향후 계획

-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·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
- 앞으로도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보도자료 배포할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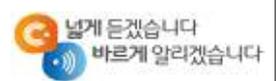
#### <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>

- ☞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/제보 전화 (02-2100-2543)
- ☞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
  - 인터넷 :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(<http://www.cybercop.or.kr>) 접속
  - 전화 : 1332 또는 02-3145-5573, 5572, 5582, 5556
  - 팩스 : 02-3145-5580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 
prfsc@korea.kr



### 1. 복수의 계좌를 이용한 단기적인 시장지배력으로 주가변동을 초래한 시세조종 사건

□ 전업투자자 A는 본인 명의 7개 계좌를 이용하여 甲사 등 12개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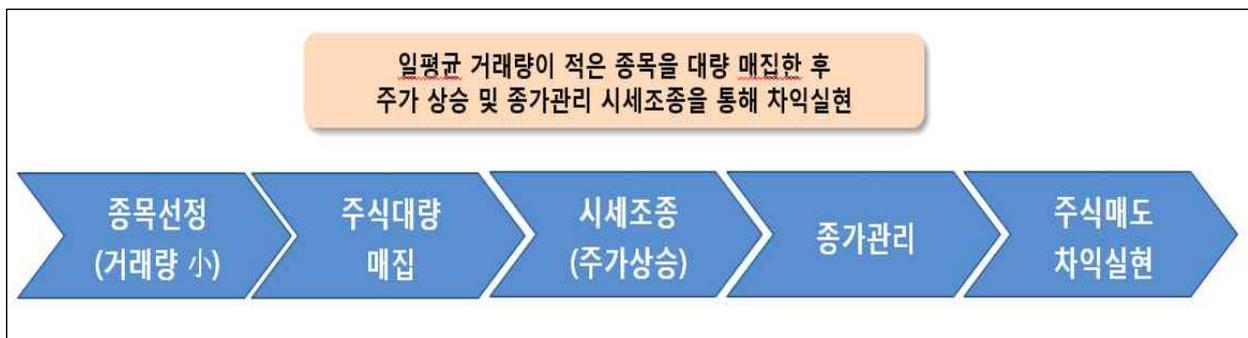
○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

○ 고가매수 등을 통해 주식을 선매수한 뒤 가장매매 및 매수·매도를 연속·반복\*하여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외관을 형성시켜 주가를 견인

\* A는 거래하던 증권사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차원의 유선경고를 받고 거래가 정지되더라도 거래 증권사를 변경하면서 시세조종성 주문 제출을 지속

○ A는 평균 7,700만원 상당의 자금을 이용하여 84거래일에 걸쳐 총 6,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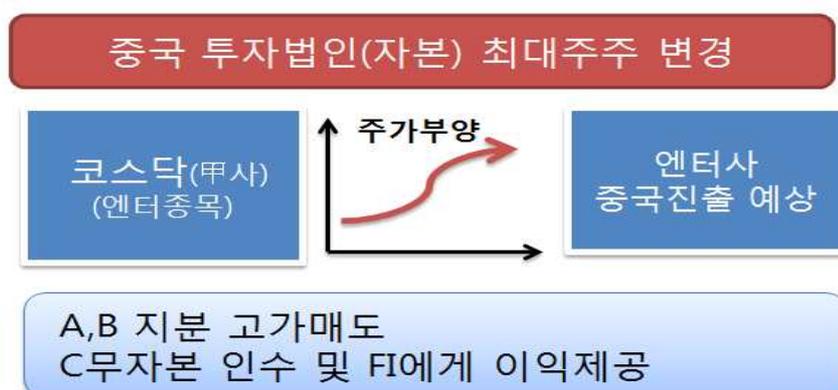
#### < 사건 개요 >



## 2. 중국계 투자자본이 코스닥 상장사(엔터)를 인수한다고 허위 기사를 보도 및 공시하여 부정거래를 한 사건

- A 및 B(양도인측: 사주 및 매도대리)는 甲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고가에 매도하고, C 및 D(양수인측: 사주 및 자금조달책)는 무자본으로 인수하면서 재무적 투자자에게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공모
  - 혐의자들은 2015.9월경 저축은행을 통해 주식담보로 조달한 차입자금과 재무적 투자자들로부터 국내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甲사를 인수하였음에도 유력 중국계 투자법인과 그 손자회사가 자기자금으로 甲사를 인수한다는 허위의 사실을 보도 및 공시
- 해외자본 투자 및 경영권 변동의 호재성 공시로 주가가 상승 (1,905원⇒3,300원)하자
  - A 및 B(양도인 측)는 매각예정 주식 외에 보유 주식을 별도로 전량 매도하여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
  - C는 甲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인수하고 재무적 투자자에게 57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제공
  - D는 저축은행 조달자금을 해외투자 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등 조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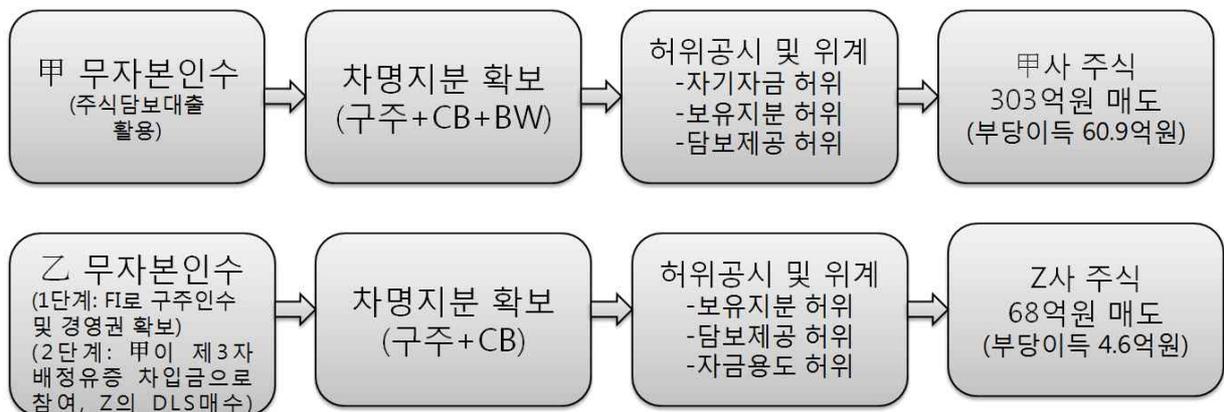
### < 사건 개요 >



### 3. 무자본 M&A을 이용하여 부정거래를 한 사건

- A, B, C 3인은 무자본 M&A라는 사실을 숨기고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전액 차입자금으로 甲사를 2016.2월에 1차로 인수한 후
  - 대외적으로는 甲사가 乙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(900억원)에 참여하여 동 자금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으로 공시하였으나, 실제로는 甲사의 차입금(800억원)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사모파생결합증권(DLS)을 인수대상 코스닥 상장사인 乙사로 하여금 매수토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은폐하고 乙사를 2017.5월경 2차로 인수
  - ‘신규 상장사 인수’나 ‘가상화폐 테마’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자 수개의 차명법인 명의로 보유하던 2개 상장사 종목의 주식 처분 내역 보고를 누락하고 대량으로 매도
- 한편, 인수계약 관련자 등 2명은 미공개 중요정보(‘동사 주식의 대량취득·처분 실시 정보’ 등)를 이용하여 부당이득 취득

#### < 사건 개요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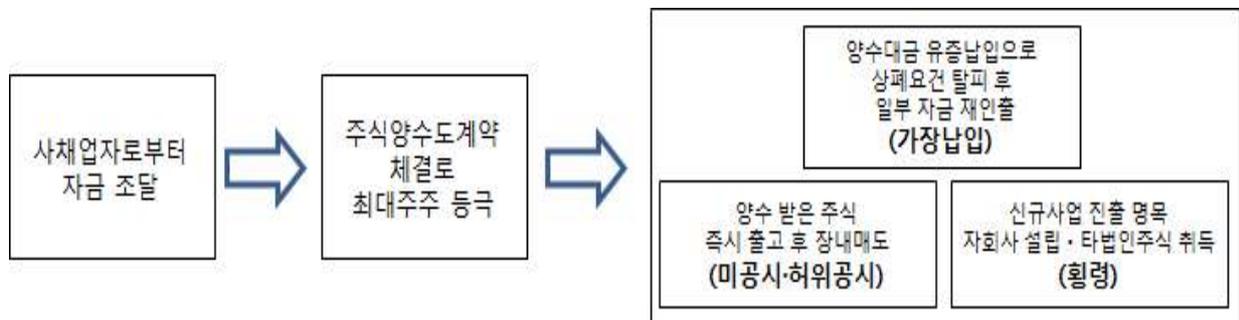
#### 4. 사채업자를 동원한 기획·복합형 불공정거래 사건

□ 乙사 대표이사 A는 丙사로부터 甲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'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'을 체결,

- 주식 양수대금을 사채업자로부터 대여 받아 丙사에게 지급, 이 중 일부를 甲사에 유상증자로 납입하여 상장폐지 요건 탈피 후 납입된 유상증자 자금 중 일부는 사채업자에게 반환,
- 양수한 주식은 즉시 사채업자에게 출고 후 대부분 장내매도 되었으며, 관련 내용을 미공시·허위공시하여 이를 은폐함
- 乙사는 甲사 인수 후 신규사업 진출을 가장한 자회사 설립 및 타법인주식 취득을 통해 회사자금 등을 횡령함

□ 한편, 甲사 前 대표이사 B는 동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 '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'라는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실현

#### < 사건 개요 >



## 5.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 사건

□ A는 甲사의 투자담당임원으로

○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乙사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자금유치를 계획하고 진행한 내부자로서

□ 동 정보가 일반에 공개될 경우 신규사업 진출로 인한 큰 폭의 주가 상승을 인지한 후

○ 일반에게 공개되기 전 지인인 B와 C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였고,

○ 이들은 甲사 주식 총 42만 6천주를 매수하여 2억6,84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

□ 정보전달자인 A, 1차 정보수령자인 B, C를 각각 수사기관에 통보

### < 사건 개요 >

